

2016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67호, 2014.12.31)에 의거 2016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목적

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체시료 분석 업무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

2. 대상기관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

3. 실시일정

- 정도관리 신청 접수	2015.12.18 까지
- 정도관리 시료 배부	2016.01.15
- 정도관리 결과 제출 마감	2016.02.05 까지
- 분석결과 판정 통보	2016.02.26

4. 평가분야 및 실시방법

가. 운영항목

1) 기존 분석자

- 무기분석만 실시

○ 무기분석 지정항목 : 혈액 중 납

○ 무기분석 선택항목 : 혈액 중 카드뮴, 망간, 소변 중 카드뮴, 수은, 비소 등 5 항목 중 1항목 이상

2) 신규 분석자

- 유기, 무기 분석 모두 실시

○ 무기분석 지정, 선택항목은 '1) 기존 분석자'의 항목과 동일함

○ 지정항목 : 소변 중 메틸마노산

○ 선택항목 : 소변 중 마노산, 만델산, 페닐글리옥실산, 삼염화초산, 총삼염화물, 묄콘산, 2,5-헥산디온, NMF, NMAC 등 9항목 중 1항목 이상

나. 분석결과 및 설명자료를 결과제출 마감일 까지 연구원에 제출

다. 기준값 및 적합 범위

- ① 기준값 : 참가기관 제출 결과 또는 첨가한 양으로부터 산출
- ② 적합범위 : 기준값 \pm 2SD 또는 15% 중 범위가 넓은 쪽을 적합 범위로 설정

라. 자료 검토

분석결과 설명자료에서 검토 문항 중 40% 이상 지적을 받으면 자료 부적합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석 결과에 관계없이 정도관리 부적합으로 평가함. 검토항목 및 기준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됨.

마. 분석 실무 현장 확인

- 신규 분석 종사자의 분석능력, 장비운용능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, 동일 기관에서 분석 인력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
- 특수건강진단 분석인력으로 등록된 분석담당자가 2인 이상 분석정도관리에 참가한 경우, 기존에 분석능력을 확인한 분석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실시하지 않으며 신규 분석자가 추가된 경우에 해당 인력에 대해서만 확인을 실시함
 - 2인 이상 분석담당자가 종사하는 기관은 기관당 1건의 결과를 제출함
- 방문자 : 연구원 분석정도관리 담당자

5.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1회 부적합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6. 참가비: 없음

7. 문 의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TEL. (052) 7030-885,873 FAX. (052) 703-0335

첨부. 분석정도관리 신청서 1부. 끝.

2015년 12월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